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13 호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3- 908호 2013년 하반기 스포츠바우처사업 모집안내 공고 2
- 공고 제2013- 9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6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3- 9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15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3- 9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19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3- 932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_지위승 24
계)사항 공시송달 공고
- 공고 제2013- 9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5호선)사업 실시 25
계획 열람공고
- 공고 제2013- 9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2-2호선)사업 27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보건소 식품위생과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30
공고 제2013- 4호 소 예정 공고
- 지식정보센터 소래역사관 구입 예정 유물 화상자료 공개 31
공고 제2013- 4호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908호

2013년 스포츠바우처사업 모집안내 공고문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2013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실시함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內 만5세~만19세 청소년 및 청소년
(1994. 1. 1 ~ 2008. 12. 31일까지 출생자)
2. 신청기간 : 2013. 6. 12 ~ 7. 11일까지 (30일간)
3.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문의 : 02-410-1298 ~ 9
4. 지원기간 : 2013. 9 ~ 12월(6개월간)
5. 지원대상자 선정 : 260명
6. 선정방법 : 지원대상 신청자에 한하여 <저 연령순>에 의거 선정
7.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2013. 7. 15.
8. 통보방법 : 세대주 휴대폰번호로 SMS 문자통보
9. 이용시설 : 스포츠바우처 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
10. 지원금액 : 스포츠강좌바우처 월 1인당 최고 7만원
※ 7만 원 이상인 체육종목 수강 시 차액은 이용자 부담
※ 제한사항
 - 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 : (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레고 등의 강좌
 -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 한 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1인 2개 강좌 지원불가)
11. 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032-453-2154)

2013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붙임 1】

「스포츠바우처」 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서

사 업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법인 관련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일	
전담관리자 성명	(전화)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기확보인력	명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스포츠바우처 참여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체육시설업 신고증 사본(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상해)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운영 시간표 1부.
6. 시설사진(외부, 내부 - 입구, 강의실, 탈의실 등) 1부.

【구비서류】

스포츠바우처 사업계획서	
사업시설명	
작성항목	작성목차
1. 제안 개요	1.1 참여 목적 및 배경
	1.2 사업 추진 방안
2. 시설 현황	2.1 연혁
	2.2 조직, 인원 및 보유시설
	2.3 주요 사업

(1면)

3. 세부 사업계획	3.1 서비스 공급지역 범위
	3.2 서비스 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
	3.3 서비스 관련 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3.4 향후 스포츠강좌 증설 계획
4. 기타	3.5 개인정보관리 방안
4.1 기타 추가 사항 등	

(2면)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9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 가. 빈곤, 가출,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어,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적절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나.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안전망(CYS-net)을 구축하고,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협력 촉진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 : 총 10인 이내 (안 제3조)

- 위원장 : 주민생활국장
- 임 기 : 2년, 연임가능

나. 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위원회 개최 및 의결 (안 제6조)

- 정기회의 개최 : 반기별 1회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평생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72, FAX 453-5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6 월 일
제 출 자 : 평생교육지원과장

□ 제안이유

- 빈곤, 가출,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어,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적절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안전망(CYS-net)을 구축하고,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협력 촉진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 총 10인 이내 (안 제3조)
 - 위원장 : 주민생활국장
 - 위 원 :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인천고용센터 취업지원2과장, 1388청소년지원단장, 남동구 청소년쉼터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개최 및 의결 (안 제6조)

- 정기회의 개최 : 반기별 1회
- 임시회의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집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 운영규칙 표준안」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같이 의결한다. 20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 재
일시	20 . . .			심의방법			장소	
참석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현황								
안전								
○ 심의내용								
○ 의결사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9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제고를 통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재구성 및 현행 법률용어 준용 【안 제6조】
 - 위촉직 위원 중 “기업의 관계자” 추가
 -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희망복지지원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14, FAX 453-2579)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제고를 통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재구성 및 현행 법률용어 준용【안 제6조】
 - 위촉직 위원 중 “기업의 관계자” 추가
 -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참고자료 (관련규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2호 중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추천하는 자, 그 밖에”를 “추천하는 자, 기업의 관계자,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③(생략)	제6조(협의회의 구성)③(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남동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u>새터민</u> 실무분과 위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이 <u>추천하는 자, 그 밖에</u> 북한이탈주민관련 전문가 등	2. ----- ----- ----- ----- <u>북한이탈주민</u> ----- ----- - <u>추천하는 자, 기업의 관계자, 그 밖</u> <u>에</u>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9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월 6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새 정부가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간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사회 안전기능 강화 및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구의 안전조직을 부분 개편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안전관련 조직 명칭 변경
 - 국 : (기존) 행정지원국 ➡ (변경) 안전행정국
 - 과 : (기존) 재난안전과 ➡ (변경) 안전관리과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0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6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새정부가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간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사회 안전기능 강화 및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구의 안전조직을 부분 개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관련 조직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8조)
 - 국 : (기존) 행정지원국 ➡ (변경) 안전행정국
 - 과 : (기존) 재난안전과 ➡ (변경) 안전관리과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행정지원국을 둔다”를 “안전행정국을 둔다”로 한다.

제8조 제목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에”를 “안전행정국에”로 하며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측정 결과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농수산개발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 미디어실, 주민생활국, 경제환경국, 건설 교통국 및 <u>행정지원국</u> 을 둔다.	제3조(실·국의 설치) ----- ----- ----- ----- <u>안전행정국</u> 을 둔다.
제8조(<u>행정지원국</u>) ① <u>행정지원국</u> 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u>재난 안전과</u>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u>행정지원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제8조(<u>안전행정국</u>) ① <u>안전행정국</u> 에 --- ----- <u>안전 관리과</u> ----- ② <u>안전행정국장</u> 은 ----- 1. ~ 21. (현행과 같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9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7호 및 제40조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_지위승계)하고자 사전통지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6. 13 ~ 6. 26 (14일간)
2. 공고의 내용

1. 제 목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_지위승계)사항 알림		
2. 당 사 자	성 명	이 인 섭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720531-1*****
	주 소	인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65, A동 904호(간석동,베네치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위반		
4. 법적근거 및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의 취소 _ 지위승계		
6. 기타(문의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연락처 - 전화 032-453-2482, 팩스 032-453-2479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9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5호선)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98-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고잔동 소1-5호선)
 - 나. 명 칭 :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1-5호선, B=10.0m, L=78.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동구청장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1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지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지번				성명	주소	
1	고잔동	298-10	전	18.0	18.0	국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2	고잔동	298-11	도	4.0	4.0	국유지	인천광역시	
3	고잔동	298-3	전	2.0	2.0	백*현	302-4	
4	고잔동	298-2	전	104.0	104.0	국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5	고잔동	298-12	도	4.0	4.0	국유지	인천광역시	
6	고잔동	298-4	전	2.0	2.0	백*현	302-4	
7	고잔동	586-28	도	4,436.0	18.0	국유지	건설부	
8	고잔동	531-3	도	1,656.0	737.0	국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장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장 물 현 황					비고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이용사항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고잔동	531-3	컨테이너하우스	3.0X6.0(1동)	사무실 및 창고	정우기계		
2	고잔동	531-3	컨테이너하우스	3.0X9.0 (1동)	사무실 및 창고	정우기계		
3	고잔동	531-3	컨테이너하우스	3.0X9.0 (2동)	사무실 및 창고	황소비철 기업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3-9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수현지구 소로2-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수현지구 소로2-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후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 건설과(☎453-2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수현지구 소2-2호선)
 - 나. 명 칭 :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2-2호선 B=8.0m, L=16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 201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있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지조서(변경있음)

연 번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도시 계획시설	비도시 계획시설			
1	변경없음	장수동	397-3	도	655	16	-	639	인천시	
2	변경없음	장수동	396-1	도	82	82	-	-	인천시 남동구	
3	변경없음	장수동	396-3	도	40	40	-	-	한*락	
4	변경없음	장수동	396-2	도	258	229	29	-	이*	미등기
5	변경없음	장수동	751	도	5,800	166	112	5,522	국(건설부)	
6	변경없음	장수동	388-2	도	168	166	2	-	원*덕, 이*창, 오*섭	공유
7	변경없음	장수동	410-7	전	47	47	-	-	인천시	
8	변경없음	장수동	410-1	도	223	63	14	146	인천시 남동구	
9	변경없음	장수동	410-8	전	167	155	-	12	인천시	
10	변경없음	장수동	395	전	366	18	-	348	오양순	
11	변경없음	장수동	397-2	도	30	13	-	17	인천시, 인천시 남동구	공유
12	변경없음	장수동	395-1	도	10	4	5	1	남동구	
13	변경없음	장수동	388-7	도	142	33	93	16	남동구	
14	변경없음	장수동	386-2	도	13	8	5	-	오*섭	
15	변경없음	장수동	386-7	도	124	-	24	100	인천시	
16	변경전	장수동	410-2	도	321	185	49	87	한*교	
16	변경후	장수동	410-2	도	321	136	55	130	한*교	
17	변경없음	장수동	410-3	도	261	159	68	34	오*현, 인천시	공유
					8,707	1,335	407	6,965		

☐ 지장물 조서(변경없음)

번 호		건물소재지		물건의 용도	건물구조	단위	총수량	편입 수량	잔여 수량	소 유 자		비고
		동명	지번							주 소	성 명	
1	1	장수	751, 388-7	입구간판	전자간판	EA	1.0	1.0	-	남동구 장수동 388-3	이용민	
	2			측백나무	B0.15,H5.0	주	101.0	101.0	-			
	3			단풍나무	B0.20,H3.0	주	10.0	10.0	-			
2		장수	751, 410-2	소나무	B0.05,H1.5	주	29	29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9길16 107-1803 (역삼동 역삼래미안)	양*숙 외 1인	
	1				B0.08,H1.8	주	17	17	-			
					B0.10,H3.0	주	1	1	-			
	2			버드나무	B0.35,H6.0	주	1	1	-			
	3			느티나무	B0.10,H2.0	주	3	3	-			
	4			벚나무	B0.1,H2.5	주	18	18	-			
	5			철쭉	H0.5	주	10	10	-			
	6			대추나무	B0.10,H2.0	주	1	1	-			
	7			사과나무	B0.10,H2.0	주	1	1	-			
	8			향나무	B0.10,H2.5	주	4	4	-			
	9			매화나무	B0.10,H2.0	주	2	2	-			
	10			앵두나무	B0.10,H2.0	주	1	1	-			
	11			모과나무	B0.10,H2.5	주	1	1	-			
	12			반송나무	B0.20,H3.0	주	4	4	-			
	13			주목나무	B0.10,H2.0	주	4	4	-			
	14			벚나무	B0.10,H2.5	주	6	6	-			
	15			화양목	H0.5	주	25	5	-			
	16			단풍나무	B0.10,H2.0	주	4	4	-			
	17			사철나무	B0.03,H1.5	주	364	364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고 제2013-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6. 2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13. 6. 10 ~ 6. 21일까지 (12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만수5 -147	어진네	김*연	백범로146번길 13, 1층(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1.1.10	2013.6.21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6. 21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식정보센터 공고 제2013-4호

소래역사관 구입 예정 유물 화상자료 공개

소래역사관에서는 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유물 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난 유물 등 불법적인 문화재의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입 예정 유물의 화상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내용 : 구입예정 유물 화상자료 (18건 43점)
2. 공개기간 : 2013. 6. 12 ~ 6. 18 (7일간)
3. 공 개 처 :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www.namdong.go.kr)
4. 연 락 처 : 소래역사관 학예실 (☎032-453-5632)

2013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식정보센터장

소래역사관 구입 예정 유물 화상 자료

연번	1	연번	2	연번	3
명칭	기차시간표	명칭	철도청 등	명칭	철도청 등
수량	1	수량	1	수량	1
시대	1952년	시대	근대	시대	1970년대
					
연번	4	연번	5	연번	6
명칭	철도청 포스터	명칭	소래역 토고득	명칭	승무원 적선 검사표
수량	1	수량	4	수량	1
시대	1988년	시대	1985년	시대	1984년
					
연번	7	연번	8	연번	9
명칭	철차 지인사유 분석표	명칭	차차 각종 계획서	명칭	철도기관사 시계
수량	1	수량	1	수량	1
시대	1985년	시대	1984년	시대	1960년대
					
					

소래역사관 구입 예정 유물 화상 자료

연번	1			연번	2			연번	3		
명칭	기차시간표			명칭	철도청 등			명칭	철도청 등		
수량	1	시대	1962년	수량	1	시대	근대	수량	1	시대	1970년대
연번	4			연번	5			연번	6		
명칭	철도청 포스터			명칭	소래역 토고목			명칭	승무원 적성 검사표		
수량	1	시대	1965년	수량	4	시대	1955년	수량	1	시대	1954년
연번	7			연번	8			연번	9		
명칭	철차 지연사유 분석표			명칭	차제 리종 계획서			명칭	철도기관사 시계		
수량	1	시대	1985년	수량	1	시대	1984년	수량	1	시대	1960년대